

환경분쟁조정사례

허 범 행 |

법무법인 로월드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석사, 행정법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재학(행정법전공)
환경보전협회 자문변호사, 원주지방환경청 자문변호사
경기특장개발 주식회사, KNU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환경기업 고문변호사
tel. 02-594-9600 | h9332@hanmail.net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취소소송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 두 1445 판결

사건의 소송 진행 경과

이 사건은 원고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피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피고가 2002. 9. 7 자, 2002. 10. 4 자, 2002. 10. 31 자 및 2002. 12. 13 자로 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이다.

제1심은 2003. 5. 15 창원지방법원(2002구합12909 폐기물처리조치명령취소)에서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항소하여 제2심은 2003. 12. 12 부산고등법원(2003누2052, 환송전판결)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의 상고로 2006. 6. 16 대법원(2004두1445)은 파기환송하였고, 2007. 3. 30 부산고등법원(2006누2886 환송후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됨으로서 사건이 종료되었다.

판결요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에 따라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방치폐기물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43조의3 제1항, 제43조의5,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2, 3, 5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의 처리명령의 대상을 방치폐기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처리할 방치폐기물의 범위가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합 분담금 납부방식외의 다른 방치폐기물처리 이행제도인 보증보험금과 이행보증금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에서 보험금 또는 보증금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보증보험금이나 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조합 분담금 납부방식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조합이 그 전량을 처리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이 방치한 폐기물전량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면 조합이 이를 단속하고 제지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어져야 하는데도 법상 조합에 대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보험제도나 이행보증금 예치제도와 그 목적 및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서 선택적 관계에 있는 조합분담금납부제도를 운영하는 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관할행정청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에 처리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제도에 관하여 법이 예정하고 있는 처리책임제한에 준하여 조합의 처리책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조합의 처리책임은 다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제도에 관한 책임제한 한도인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의 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3. 5. 29 법률 6912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제11항은 위 경우에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처리량에 대하여만 처리명령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2004.

2. 17 대통령령 제1823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1항은 조합에 대한 처리명령의 처리량을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리명령대상 방치폐기물

'원창'의 허용보관량은 3,076.58톤이므로 피고가 법에 따라 원고조합에 처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치폐기물은 위 허용보관량의 1.5배에 해당하는 4,614.87톤(의무처리량이라고 함)으로 제한된다.

(3) 원창처리량의 포함여부와 빗물유입으로 증가된 양의 별도 처리의무여부 등

원고조합이 의무처리량을 처리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원창'의 처리량의 포함여부에 대해 원·피고 간의 다툼이 있으나 '원창'의 처리량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2002. 9. 7자 처분일 현재 원고의 처리량은 4,487.04톤으로 의무처리량인 4614.87톤에 127.87톤이 부족하나 그 이후 2002. 10. 4 및 같은 달 31과 같은 해 12. 13자 처분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처리량 5,275.97톤은 이미 의무처리량을 초과하였다.

피고는 원고조합이 피고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빗물의 유입으로 방치폐기물의 양이 증가되었으므로 증가된 폐기물량의 처리의무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의무처리량이 당초 '원창'이 보관하고 있던 방치폐기물의 양보다 적은 이상 빗물이나 지하수의 유입으로 폐유의 양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폐기물처리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 분담금 납부방식 외의 다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제도인 보증보험금과 이행보증금의 경우 보증보험금이나 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자우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처분일 현재 원고의 의무처리량 중 원고의 기처리량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처리를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피고의 원고조합에 대한 2002. 9. 7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중 127.83톤을 초과한 부분 및 2002. 10. 4자, 2002. 10. 31자 및 2002. 12. 13자 각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평 가

대상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지방환경청의 방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인 폐기물처리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의 양적 범위를 제한한 점에 의미가 있다.

즉 폐기물처리업체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로 적절하게 한정함으로서 보증보험, 이행보증예치제도 등 다른 폐기물처리이행제도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인 처리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전량에 대해 내린 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